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정보자원 활용을 위해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040호, 2024.1.16. 공포, 2024.4.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추가(안 제10조제2호 신설)

- 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범위에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나.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14조의4제1항 신설)

-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수행 범위 등 규정

다. 자료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4조의4제2항 신설)

-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

규정

대통령령 제 호

라. 업무 위탁 전문기관 설정(안 제19조제2항 신설)

-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8. ~ 3.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개선 업무
2. 광역버스 인·면허 및 운영정보 등의 생성·수집·분석·관리·제공 등 업무
3.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업무
4.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중장기 계획 및 고도화에 관한 업무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법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신설> 2. ~ 4. (생략) <신설>	제10조(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제14조의4(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개선 업무 2. 광역버스 인·면허 및 운영정보 등의 생성·수집·분석·관리·제공 등 업무 3.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업무

5. 그 밖에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가. 광역버스 운행이력정보

나. 승객의 승차·하차 및 운송수입금 정보

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역버스운행정보

2.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업무의 위탁) (생략)	4. <u>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중 장기 계획 및 고도화에 관한 업무</u> 5. <u>그 밖에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u> ② <u>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u> <u>가. 광역버스 운행이력정보</u> <u>나. 승객의 승차·하차 및 운송수입금 정보</u> <u>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역버스운행정보</u> 2. <u>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u>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	--

<신설>	② <u>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u>
------	--